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76 발의연월일: 2022. 7. 4.

발 의 자:이만희·강대식·김미애

김상훈 · 김승수 · 성일종

유경준 · 윤한홍 · 이명수

정경희 의원(10인)

제안이유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을 통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발표·시행함. 이를 통해 '21년 기준, 연간약 1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감면이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 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어 수혜 대상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음.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 ·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를 면제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과도한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함(안 제36조의3).

- 1)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 2)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취득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이하인 주택"을 "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또는 제3항"을 "제3항"으로,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를 "무주택자"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 을 공제한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법률 제186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중 "제36

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을 "제40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	대한 취득세 감면) ①
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	
는 경우로서 <u>합산소득이 7천만</u>	<u>주택</u>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	
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	
(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	
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	
(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	
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 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득세를 면제한다.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

-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 ③ ④ (생 략)
- 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

-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 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 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200만원을 공제한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 ③ ④ (현행과 같음)

(5)	<u>제3항</u>	
	무주택자	

<삭 제>

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8656호 지방세특례제한 법률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 일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 조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조제1항제8호의2, 제31조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 36조의2제1항제3호, <u>제36조의3</u>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관 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 및 제75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 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 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 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8656호	지방세	특례제한
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		
		<u>z</u>]40조의2
제1	<u> 항</u>		